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0 선고 2013가합51992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4. 5. 20.

판결 선고 2014. 6.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34,690원 및 그 중 101,386,904원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2.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2. 8. 1.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3. 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8. 1. 접수 제17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3. 2. 25. 접수 제4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 1) 원고는 2010. 6.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5.(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13. 6. 14.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0. 6. 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취득

피고 회사는 2012. 11. 1. 국세를 체납하여 2012. 12. 18.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2. 25.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101,386,904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520,406원을 지출하였다가 572,620원을 회수하여 합계 102,334,690원 [101,386,904원 + 947,786원 (1,520,406원 - 572,62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부동산의 처분

피고 C은 피고 D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8. 1. 접수 제1779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고, 2013. 2. 2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3. 2. 25. 접수 제4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102,334,690원 및 그 중 101,386,90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14. 2. 3.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이 각 성립되어 있었고, 2012. 12. 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D는,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B, C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아니하여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올라 제1호증의 1의 기재, 평창군수, 인천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235,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 알씨아이파이낸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75,728,000원 채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대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0,000,000원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

1) 피고 D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는 피고 C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피고 C에게 135,68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의 채무 70,000,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205,6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올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8. 1.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2. 21. 피고 C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D의 주장사실만으로 피고 D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D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2. 21. 피고 C와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 D가 제출한 증거에는 부동산소개업자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 C를 만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2)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 D가 당시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진정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12. 9. 28.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이것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D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예약일에 지급된 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이고 위 1,500,000원은 그 이자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피고 D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현금 5,6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 C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가 7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이태경

판사이지웅

별지